의안번호	2200989
의 뢰 인	김용민의원
회 답 일	2024.08.16.
추계번호	24D14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대구광역시에 둠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소재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대법원 대구광역시 이전(안 제12조)

○ 개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규정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대구광역시에 건립될 대법원 청사의 대지면적·건물연면적, 기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설치·공사비, 직원 이사지원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토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에 건립될 대법원 청사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현재 청사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관이전비 및 직원 정주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이전 규모, 이사 직원 수 및 1인당 평균 이사비용[1)]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당시 소요된 이전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비용

구분		비용
기관 이전비	기관이사비	이전 직원 1인당 평균 281만원
	설치·공사비	이전 직원 1인당 평균 559만원
직원 정주비용	이사지원비	이사 직원 1인당 평균 142만원
	이주지원비	이전 직원 1인당 월 20만원(2년간 지급)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5] 이전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